

#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달성군에서는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1. 사업목적

- 직무역량을 갖추었으나 취업기회가 부족한 신중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달성군 소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중년 구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6일 ~ 12월 31일 (12개월)
- (모집대상) : 달성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
- (선정규모) : 총 12명 내외(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 기채용 인원 제외 잔여 인원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 사업기간 내 결원 발생 시 추가 채용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참여자 채용 후 3개월 근속 시점부터 최대 6개월(사업기간 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
  - 참여기업 : 채용 3개월 경과 후 월 7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 1인당 최대 420만 원 한도
  - 참여자 : 채용 3개월 경과 후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회 지원
    - ※ 1인당 최대 180만 원 한도

###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개시일 기준 달성군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확인 必)
  - ※ 피보험자 계산 시 사업주, 일용직, 채용 예정자는 제외
  - ※ 사업주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 시 각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를 합산 적용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참여인력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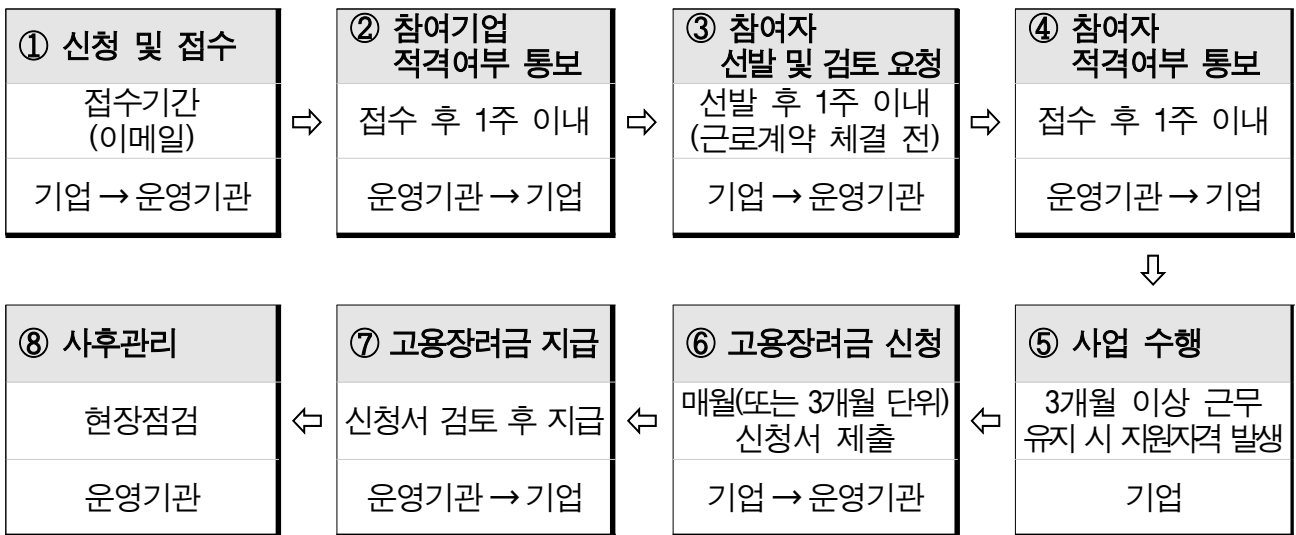
- 연 령 : 2026. 1. 1. 기준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65세 이하 중장년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 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
- 거주지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달성군 거주 또는 거주 \*희망자
  - \* 타시도 및 구군에 거주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입
- 채 용 : 참여기업 적격여부 통보 후 선발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 참여기업 및 참여자 적격여부 통보 전 기채용자 참여 불가
- 경 력 :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자
- 근로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 참여제한(공고일 기준)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 또는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
- (참여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참여기업)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참여기업) 공고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 (참여기업) 과거 인위적 감원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참여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참여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참여기업)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참 여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 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가능
- (참 여 자) 공고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 (참 여 자)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인 자
- (참 여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참 여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 (참 여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참 여 자)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상담 등)
-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참여기업 지원절차



#### ○ 선정방법

-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기업 모두 지원기업으로 선정
- 기업 선정 통보 이후 기업 자체적으로 참여자 채용 절차 진행하여 통보 (적격여부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신청접수 후 1주 이내 상시 통보

- 참여기업 선정 통보 후 기업별 참여자 자체 모집
- 참여자 선발 후 근로계약 체결 전 참여자 적격여부 검토 : 1주 이내 통보
- 근로자 채용(근로계약 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기업 최종 선정

## 5.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채용시기 등에 따라 지원금 발생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기간 내 발생분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사업 종료 이후 발생분 지원 불가)
-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기준) 시 고용장려금을 미지급함
- 지원기간 중 3개월 이내 근로자의 중도 퇴사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에서 배제함 (※ 대체인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지역 정착(거주)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타지역(시도 및 구군)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로 전입을 해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기간부터 지원종료 후 1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6. 문의 및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담당자 : 이예승 연구원
  - 연락처 : 053-615-1953
- 공고기간 : 2026년 5월 15일(금) ~ 5월 29일(금)
- 접수기간 : 2026년 5월 15일(금) ~ 5월 29일(금)
- 접수방법 : 이메일(hope1953@daum.net) 접수(원본 별도 보관)
  - ※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 제출서류

연번	서식	제 출 서 류
1	【서식1】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2】	기업현황카드 1부
3	【서식3】	참여기업제외 대상 미해당 확인서
4	【서식4】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캡처)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必

※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서식1】

##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6. 00. 00.)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설립일				대표이사		
	근로자수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업종/업태				주요생산품		
	신청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기업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채용 (계획) 인력	모집분야				근무부서		
	담당업무				임금		
	자격요건						
	근무지	(주소)					

당사는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서식1]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2] 기업현황카드 1부
3. [서식3] 참여기업제외 대상 미해당 확인서
4. [서식4]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서식4】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 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공고개시일 이전 <b>6개월 이내</b>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임금 등 체불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 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인)

###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 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 조회, 휴·폐업 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li> <li>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li> <li>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li> <li>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원요건 충족 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li> </ul>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